신《회사법》의 주요 조항 및 관련 영향 해설

2024.01

Issue 2

개요

기다리던《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개정안(신《회사법》또는 신법)이 마침내 2023 년 마지막 근무일인 2023 년 12 월 29 일에 확정되었습니다. 이날 신《회사법》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였으며, 2024 년 7 월 1 일부터 공식적으로 시행됩니다.

신《회사법》은 기본적으로《회사법》 3 차 심사원고(3 차 심사원고)의 개정 정신을 따랐고, 몇 가지 구체적인 조항을 개선하였습니다. 현행《회사법》과 비교할 때 신《회사법》은 총 15 장 226 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회사 설립, 운영, 변경, 경영 등의 분야에서 모두 조정이 이루어졌는데, 이는 《회사법》이 1993 년 처음 공포된 이후 가장 포괄적인 개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은 현존하는 모든 회사와 중국 본토에서 회사를 신설할 계획이 있는 경내외 투자자들에게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번 News flash에서는 (i) 자본제도, (ii) 회사 지배구조, (iii) 이사/감사/고급관리인의 의무 및 (iv) 절차 간소화의 4 가지 영역을 중심으로 신《회사법》의 개정 핵심내용 및 관련 영향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상세 내용

- 一、자본제도 개정
- 1. 자본충실원칙의 강조

신《회사법》은 등록자본이 5 년 이내에 납부되어야 한다는 점을 규정했습니다. 이 요구사항은 3 차심사원고에서 처음 등장하였는데, 개정 과정에서 논란이 가장 크고 영향도 가장 광범위한 개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2013 년부터 《회사법》에 의해 회사 자본금 인납제도가 실시되었는데, 소수의 업종을 제외하고 거의 모든 회사가 납부 기한을 설정하지 않고 회사 주주에게 스스로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신《회사법》하에서 유한책임회사의 모든 주주는 회사 설립일로부터 5 년 이내에 납입하기로 한 등록자본을 전부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법률, 행정법규 및 국무원에서 유한책임회사의 등록자본금의 실납, 등록자본의 최저한도, 주주 출자 기한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따릅니다. 아울러, 해당 실납기한은 증자의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신《회사법》은 아래와 같은 일련의 요구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 (1) 이사회의 주주 출자 심사 의무: 이사회는 주주의 출자 상황에 대해 심사해야 하며, 기한대로 출자액을 납부하지 않은 것을 발견한 경우 회사를 통해 해당 주주에게 출자액 납부를 재촉해야 합니다.
- (2) 주주 권리 상실 제도: 기한대로 출자액을 납부하지 않은 주주가 유예 기한 만료 시에도 여전히 출자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회사는 이사회 결의를 통해 주주에게 미납 출자분에 대한 주주로서의 권리가 박탈되며, 해당 지분이 양도 또는 말소로 처리될 것임을 통지합니다.
- (3) 주주의 배상책임 명시: 주주가 기한대로 출자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회사에 출자액을 납부해야 함은 물론이고 회사에 초래한 손실에 대해 배상책임도 부담해야 합니다. 설립 당시의 기타 주주와 해당 주주는 출자 부족액의 범위 내에서 연대 책임을 부담합니다.
- (4) 실납 의무의 만기 가속화: 회사가 만기 도래 채무를 상환할 수 없는 경우, 회사 또는 만기 도래 채권의 채권자는 출자액을 납부하기로 했지만 아직 납부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주주에게 출자액을 미리 납부하라고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상기 개정은 기존회사에 비교적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2023 년 11 월말 기준 중국 내 기업 수는 4,839 만개사에 달하고, 그 중 99%가 영세기업에 속하며, 이들 중 상당수는 유연한 출자 기한을 설정했습니다. 그러나 신《회사법》은 "소급"이라는 입법 모델을 채택하고, 기존회사에 대해서도 여전히 최신 규정에 따라 신법이 규정한 기한내(5 년)로 "점차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시할 지는 국무원이 발표하는 관련 규정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신《회사법》제 226 조 규정에 따르면, 기업의 출자기한이나 출자금액이 눈에 띄게 비정상적일 경우 회사는 회사등록기관으로부터 조정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회사 등록기관에 출자기한 조정 권리를 부여하려는 것이지만, 주주 계약과 등록기관의 권한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맞출 것인지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 《회사법》은 유한책임회사 등록자본의 "인납 제한 제도"와 달리 지분유한회사의 발기인에 대해서는 "실납제도"를 실시하도록 요구하였으므로, 발기인은 회사 설립 전, 청약한 주식의 전액을 납입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 2. 감자 규정의 추가 및 세분화
- (1) 신《회사법》에 따르면 회사의 등록자본 감소는 전체 주주가 동일한 비율로 자본금을 감소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고, 유한책임회사 전체 주주 간 별도의 약정이 있거나 지분유한회사 정관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2) 신《회사법》제 225 조에는 감자에 의한 결손 보전 제도를 추가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공적금으로 회사의 결손을 보전하려면 먼저 임의공적금과 법정공적금을 사용해야 합니다. 여전히 보전할 수 없는 경우, 규정에 따라 자본 공적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본공적금을 사용하여 결손을 보전한 후에도 여전히 결손이 있는 경우 등록자본을 감소하여 결손을 보전할 수 있습니다. 감자에 의한 결손 보전 절차의 경우 회사는 일반적인 감자 절차에서 요구되는 채권자 통지 및 신고 절차를 완료할 필요가 없습니다.

二、회사 지배구조 개선

신 《회사법》은 회사 지배구조에 대해 큰 개정을 실시했습니다. 지분유한회사의 회사 지배구조 차원에서의 규정이유한책임회사의 규정과 점점 동일해졌으며, 이사회의 지위와 역할이 회사 지배구조에서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1. 주주회(股东会)

신《회사법》은 호칭을 통일했습니다. 유한책임회사든 지분유한회사든 그 의사결정기구는 일제히 주주회로 통칭하고 과거 지분유한회사에 대한 "주주총회(股东大会)"라는 호칭을 폐지했습니다. 기존《회사법》과 달리, 주주회의 법정 직권은 더이상 "회사 경영방침 및 투자계획 결정"과 "회사 연간 재무 예산방안 및 결산방안에 대한 심사와 승인"이라는 두 가지 사항을 포함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신《회사법》은 1 인유한회사에 대한 특례 조항을 폐지하고 더 이상 주식회사의 주주 수에 제한이 없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앞으로 1 인 주주로 된 지분유한회사가 더 많이 등장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2. 이사회 및 경리

2

普华永道

신《회사법》은 이사회 인원 구성을 개정하여 유한책임회사와 지분유한회사의 이사회 구성원 인원수가 최소 3 인이며, 최대 인원수를 설정하지 않는 것으로 통일했습니다. 직원 인원수가 300 명 이상의 유한책임회사는, 법에 의해 감사회를 두고회사 직원 대표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이사회 구성원 중에 반드시 회사 직원 대표가 있어야 합니다. 아울러, 유한책임회사 집행이사의 호칭을 취소하였습니다. 또한, 신《회사법》은 이사회에 더 많은 직권을 부여했는데, 예를 들어의견 수렴 단계에서 삭제되었던 "회사 경영계획 및 투자방안 결정"을 이사회에 남겨두었습니다. 지분유한회사 이사회는정관 또는 주주회의 승인을 받아 3 년 이내에 기발행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하지 않은 주식을 발행하도록 결정할 수있습니다.

또한, 신《회사법》은 경리의 직권을 더이상 규정하지 않음으로써, 경리의 직권 범위 설정은 회사 정관 규정 또는 이사회 승인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3. 감사위원회(审计委员会) 추가

신《회사법》에 따라 유한책임회사, 지분유한회사, 상장회사 또는 국유독자회사는 이사회에 감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감사위원회의 기본 기능은 감사회(监事会)를 대신하여 감사회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이를 토대로 신법은 유형이 다른 회사에 대해 감사위원회 인원 구성, 결의 규칙, 기타 기능에 관하여 상이한 규정을 두었습니다.

4. 감사회 또는 감사(监事)의 불필요

규모가 작거나 주주 인원수가 비교적 적은 유한책임회사 및 지분유한회사는 감사회를 설치할 필요가 없으며 1 명의 감사를 지정하면 됩니다.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거나 모든 주주의 동의를 구한 경우에 유한책임회사는 감사회 또는 감사를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에 비해 지분유한회사는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에만 감사회 또는 감사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 법정대표인

신《회사법》에 따르면 법정대표인은 회사를 대표하여 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이사 또는 경리가 담당합니다. 이와 더불어, 회사 법정대표인의 직책, 특히 회사 내부 문서를 발급하고 회사 등기사항을 처리할 때의 직책 및 의무를 강화하고 세분화했습니다.

6. 실질통제인

3

신법은 실질통제인의 정의를 조정하여 투자관계, 계약 또는 기타 약정을 통해 회사 행위를 실질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자를 포함하도록 했으며 실질통제인에 지배주주가 포함됨을 명확하게 규정했습니다. 실질통제인에 대해서 신《회사법》은 보다 많은 제한을 부여했습니다. 신《회사법》에 따르면 회사의 지배주주와 실질통제인이 이사와 고급관리인으로 하여금 회사 또는 주주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를 하도록 지시하는 경우, 해당 이사, 고급관리인과 연대 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회사의 지배주주와 실질통제인이 회사의 이사를 담당하지는 않으나 회사 사무를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경우, 회사에 대해 충실 및 근면의 의무를 부담해야 합니다.

三、이사/감사/고급관리인의 직책 강화

신《회사법》은 회사 소유권과 경영권의 분리 원칙을 추가적으로 강조했으며 이사/감사/고급관리인의 충실 및 근면 의무를 강화했습니다. 이는 아래 사항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 1. 주주 출자액을 심사하고 재촉하는 이사회의 직책을 추가하였습니다.
- 2. 지분유한회사 이사회는 회사 정관 또는 주주회의 승인 범위 내 3 년 이내에 발행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주식을 발행할 것을 결정할 수 있으나, 비화폐성자산 형태의 자본금 출자는 주주회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 3. 이사회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 회사 정관 또는 주주회의 승인을 거쳐 타인이 본 회사 또는 그 모회사의 지분을 취득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에 대해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담당 이사/감사/고급관리인은 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 4. 회사와 그 지분 90%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 간의 합병의 경우 및 합병대가가 본 회사 순자산의 10%를 초과하지 않는 합병의 경우, 이사회가 주주회를 대신하여 결의를 할 수 있습니다.

- 5. 이사가 회사 청산 의무자인 경우, 원칙적으로 청산팀은 이사로 구성됩니다.
- 6. 이사/감사/고급관리인이 회사에 대해 충실 의무를 부담하고 있음을 명확히 하며, 특수관계거래, 회사 비즈니스 기회 및 동종업계 경쟁 시의 이사/감사/고급관리인의 직책과 의무를 세분화하였습니다.
- 7. 이사/감사/고급관리인이 직무를 수행할 때 법률, 행정법규 또는 회사 정관 규정을 위반하여 회사에 손실을 초래한 경우 배상책임을 져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사, 고급관리인이 직무를 수행할 때 타인에게 손실을 초래한 경우회사가 배상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사, 고급관리인이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 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四、회사 존속기간 중 일부 절차의 간소화

1. 회사등기 섹션 추가

4

- (1) 회사의 생명 주기별로 회사등기 사항을 요약하면서 별도로 제 2 장으로 배치하였는데, 여기에는 회사 설립, 변경, 말소 등 등기와 공시사항이 포함됩니다.
- (2) 전자 영업집조(사업자등록증)와 서면 영업집조가 동등한 법적 효력이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3) 회사등기사항이 등기 또는 변경등기가 되지 않은 경우 선량한 제 3 자에게 대항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2. 감자 절차의 간소화: 자본공적금을 사용하여도 결손을 다 보전할 수 없어 감자를 진행하는 경우, 채권자에게 통지하지 않고 주주회가 등록자본 감소 결의를 한 날부터 30 일 이내에 신문지 또는 국가기업신용정보공시시스템에서 공고를 하면 됩니다.
- 3. 간이말소(회사가 존속기간 동안 채무를 발생시키지 않았거나 모든 채무를 상환한 경우에 적용됨) 및 강제말소(회사가 영업집조를 말소당하거나 경영 중단 또는 말소를 요구받은 경우에 적용됨)의 상황 추가: 신법은 해당 경우에 대한 간이절차를 규정하였으며, 회사 말소에 소요되는 시간은 대폭 단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회사법》은 전방위적인 변혁을 가져왔으며, 회사 및 그 주주, 이사/감사/고급관리인 및 직원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컴플라이언스에 대해 새로운 도전을 가져왔습니다. PwC 는 신《회사법》의 개정으로 인한 영향을 계속 지켜보고, 계속해서 관련 문제에 대해 전문적인 견해를 발표하며, 고객사를 위해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해드릴 것입니다.

普华永道

자세한 문의는 PwC China KBD (Korean Business Desk)에 문의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PwC China KBD CONTACT LIST

대표 **김도현 Partner** (86) (10) 6533-3596 dh.kim@cn.pwc.com

북경 (회계감사 & Tax) 윤석 Director (86) (10) 6533-3219 dan.s.yoon@cn.pwc.com

(회계감사 & Tax) 유지영 (86) (10) 8553-1114 jiyoung,j.yu@cn.pwc.com

(회계감사 & Tax) 김원택 (86) (10) 6533-6416 won-taek.w.kim@cn.pwc.com

상해 (회계감사 & Tax) 신영직 Partner (86) (21) 2323-1080 jake.shin@cn.pwc.com

(회계감사 & Tax) 김수연 (86) (21) 5368-4085 suyon.s.kim@cn.pwc.com

(회계감사 & Tax) Elaine Chen (86) (21) 2323-8093 elaine.yl.chen@cn.pwc.com

(TP) 최영선 (86) (21) 2323-1331 chris.choi@cn.pwc.com

광주 (회계감사 & Tax) 최영기 (86) (20) 3819-2531 younggi.y.choi@cn.pwc.com

홍콩 **우종욱 Director** (852) 2289-1243 jongwook.woo@hk.pwc.com

참고로, 저희의 지난호 뉴스플래시(영문/중문/국문)는 아래 링크된 사이트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www.pwccn.com/en/services/tax/publications/taxlibrary-chinatax-kr.html

5 普华永道



文中所称的中国指中国内地,不包括香港特别行政区、澳门特别行政区和台湾地区。

本刊物中的信息仅供一般参考之用,而不可视为详尽的说明。相关法律的适用和影响可能因个案所涉的具体事实而有所不同。在有所举措前,请确保向您的普华永道客户服务团队或其他税务顾问获取针对您具体情况的专业意见。本刊物中的内容是根据当日有效的法律及可获得的资料于 2024 年 1 月 5 日编制而成的。

这份中国税务/商务新知由普华永道中国税收政策服务编制。<mark>普华永道中国税收政策服务</mark>是由富经验的税务专家所组成的团队。团队致力搜集、研究并分析中国内地、香港地区和新加坡现有和演变中的税务及相关商务政策,目的是协助普华永道税务部专业人员提供更优质的服务,并通过与有关的税务和其它政策机关、学院、工商业界、专业团体、及对我们的专业知识感兴趣的人士分享交流,以保持我们在税务专业知识领域的领导地位。

如欲了解更多信息请联系:

马龙

电话: +86 (10) 6533 3103 long.ma@cn.pwc.com

有关最新商业问题的解决方案,欢迎浏览普华永道/罗兵咸永道之网页: http://www.pwccn.com 或 http://www.pwchk.com

www.pwccn.com

© 2024 普华永道。版权所有。普华永道乃指普华永道网络及/或普华永道网络中各自独立的成员机构。详情请浏览 www.pwc.com/structure。

© 2024 程伟宾律师事务所。版权所有。程伟宾律师事务所是一家独立的香港律师事务所。详情请浏览 www.tiangandpartners.com。